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22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김승원 · 한준호 · 최기상
전용기 · 김남근 · 이성운
김한규 · 김남희 · 손 솔
서삼석 · 박은정 · 박지원
임호선 · 박균택 · 이재관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의 지급기한별로 공제율(0.15~0.5%)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한편,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현금유동성 확보, 금융비용 절감, 부도 예방 등을 위하여 기존 거래수단의 기능을 보완한 제도로,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의 단축을 유도하

기에는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7조의4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2항제1호 표 중 “1천분의 5”를 “1천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A - B) \times \text{1천분의 5}$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 ----- ----- ----- -----. $\text{-----} \times \text{1천분의 10}$ ----- -----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